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섬유제품

- 분석 배경 :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세계 8위의 섬유수출국이며, 섬유생산 기술은 세계 5위 수준이다. 또한, 원자재의 3분의 1을 해외에서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완제품의 3분의 2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및 수출주도형의 복합적인 산업구조이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 섬유산업은 관세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산업으로 FTA 효과와 함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EU와 미국을 포함한 FTA국별 섬유상위품목의 수출입 동향, 주요 품목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해 본다.
- 분석 범위 : 섬유제품

I. 섬유제품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1) 섬유제품 교역동향

FTA 국가로의 섬유제품 교역 지난 3개년간 평균 수출 45.6%로 안정적인 수준, 수입은 지속 증가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2012년 對세계 수출은 155억불, 수입은 119억불을 기록하였다.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은 72억불, 수입은 48억불로 수출규모가 약 1.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섬유제품 전체 수출입 가운데, FTA 국가로의 수출은 46.4%, 수입은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FTA 국가와 섬유류 교역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FTA 국가로의 교역은 지난 3개년(‘10~’12년)동안 평균수출은 45.6%로 안정적인 수준이며, 평균수입은 3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4-1 | 우리나라 섬유제품 수출입 현황(2010~2012)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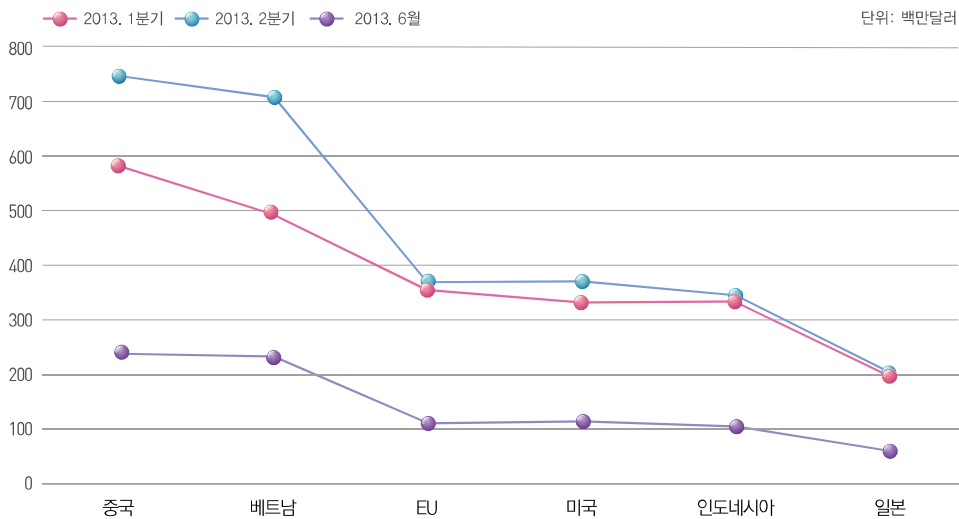
연도	수출			수입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³¹⁾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3개년 평균값	15,142	6,909	45.6	11,514	4,452	38.7
2012	15,595	7,231	46.4	11,989	4,898	40.9
2011	15,932	7,400	46.4	12,628	4,870	38.6
2010	13,899	6,095	43.9	9,924	3,588	36.2

31) 섬유제품 對세계 수출실적 중 FTA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 섬유제품의 국가별 교역현황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일본 등이 주요 교역 국가이며, 서구권에서는 EU와 미국과의 섬유수출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국과의 섬유제품 수출현황을 파악해보면, 중국, 베트남, EU와 미국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섬유제품이 수출증가로 0.5% 상승하였다. 對베트남은 직물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6월 기준 국가별 수출현황은 미국의 경기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7%감소하였으나, 중국(2.7%), 베트남(26.8%), EU(4.9%)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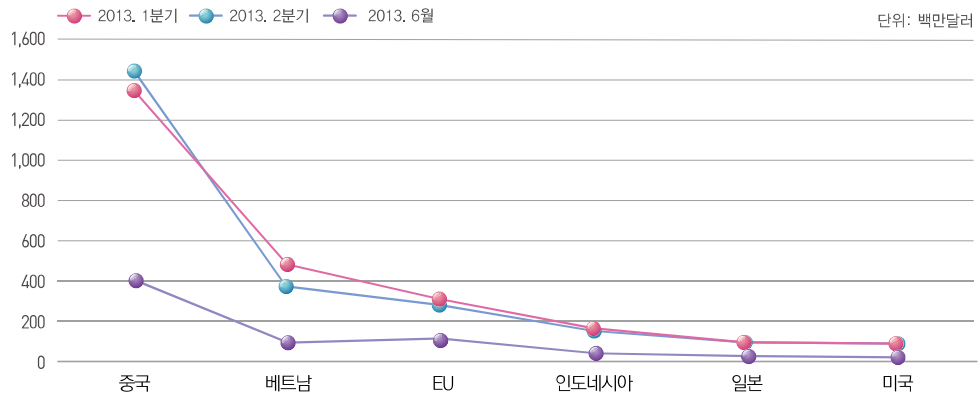
| 그림 4-1 | 주요국 수출실적 현황



우리나라 섬유제품 수입현황은 중국, 베트남, 미국 및 EU로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일본으로의 수입은 감소하였다. 특히, 미국으로 섬유원료, 섬유사 및 섬유제품의 수입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3%가 증가하였다.

對베트남 수입은 4.7% 상승한 1억 300만불을 기록하였으며, 의류수입이 23.9%(5,330만불)로 전체수입의 51.7%를 차지한다. 수입비중은 2013년 6월 기준 중국이 47.7%, 베트남 11.9%, EU 0.8%, 미국 4.2%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일본은 13.6% 감소하였다.

| 그림 4-2 | 주요국 수입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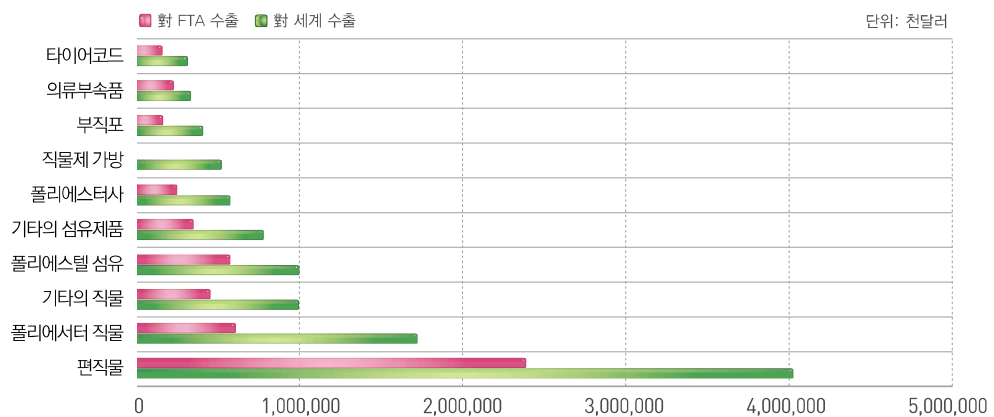


2) 섬유제품 수출 품목

2012년 對세계 섬유제품 수출상위 품목은 편직물, 폴리에스터 직물, 기타의 직물 등이다.

수출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의류부속품(71.9%) > 폴리에스텔 섬유(60.0%) > 기타의 섬유제품(50.1%)이다.

| 그림 4-3 | 섬유제품 수출 주요품목과 FTA 점유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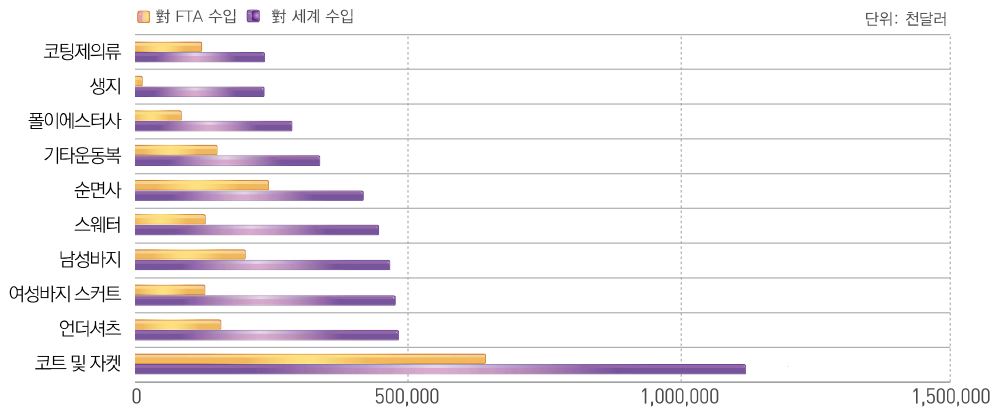


3) 섬유제품 수입 품목

2012년 섬유제품 수입상위 품목은 코트 및 자켓, 언더셔츠³²⁾, 여성바지 스커트 등으로 의류의 비중이 높다.

수입상위 1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순면사(59.9%) > 코팅제의류(54.8%) > 남성바지(45.7%) > 등이다.

| 그림 4-4 | 섬유제품 수입 주요품목과 FTA 점유율 (2012)



II. 섬유제품 FTA 특혜 교역의 특징

2012년 섬유제품 수출규모 ASEAN, 미국, EU로부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섬유제품 FTA 특혜 수출

2012년 섬유제품 중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상 품목'³³⁾의 수출액은 약 49억불이다.

FTA국 중 수출 실적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권은 ASEAN, EU, 미국으로 구성비중³⁴⁾은 각각 42.3%, 27.7%, 26.0%를 차지한다.

한편, ASEAN의 총 수출실적은 다른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나, FTA 활용비중은 미미하다. 이는 ASEAN 개별 국가별로 섬유제품의 양허수준이 다르며, 과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 수출하였으나, 아시아 국가의 인건비가 상승하여 현재는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여 수출하는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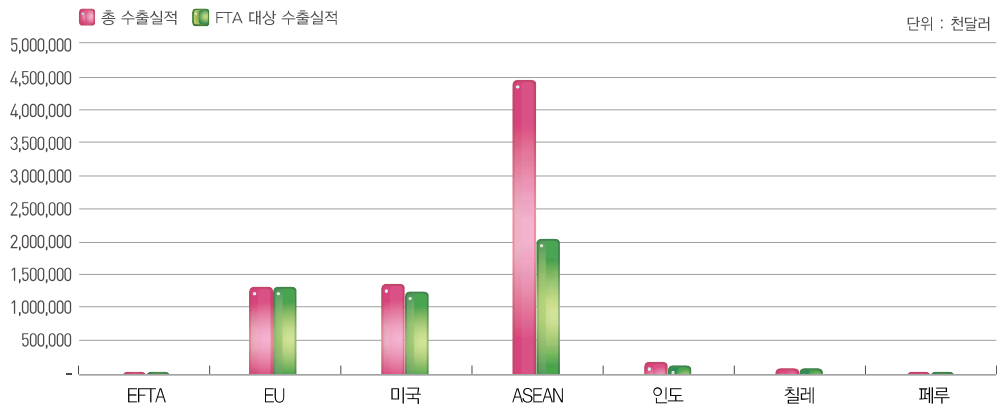
이와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의류 기업은 생산비 절감을 이유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자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2) 속옷, 내복으로 입는 셔츠의 총칭

33) FTA 협정 체결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우리나라가 수출시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

34) FTA 대상 수출금액 총계 중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

| 그림 4-5 | 협정별 섬유제품 수출현황(2012)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지만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구매할 의향이 있고, 앞으로 많은 업체가 미국으로 회귀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FTA가 발효된 시점에서 국내기업은 미국진출 타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섬유제품 FTA 수출 활용 EU의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미국에 비해 FTA 활용수준 높음

수출실적 1위 국가인 중국을 제외하고, 수출규모와 FTA 활용비중이 높은 국가는 EU와 미국이다. EU 주요 품목의 평균 FTA 활용 수준이 84.5%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위 10대품목의 FTA 활용수준이 가장 높았다. 특히, EU에서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이며, 이 중 섬유제품 관세율은 7.9%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였다.

EU 주요품목의 FTA 활용수준이 높은 것은 한·EU FTA로 인해 관세철폐 효과가 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U 섬유제품 개별 품목 중에서는 편직물의 수출규모와 FTA 활용비중이 높았다. 이는 편직물의 기존 관세가 8%이던 것이, FTA 협정 이후 무관세가 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의 상위 10대품목 평균 FTA활용수준은 66.1%로 수출규모 대비 FTA 활용비중은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섬유제품의 원산지 자격으로 원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 재단, 봉제 등을 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역내에서 실을 짜고, 역내산 실로 옷감으로 만들어, 옷을 재단하고 봉제해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직물기준을 사용하여 직물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며, 이후의 생산 공정³⁵⁾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미 FTA 원사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있다.

이외에 섬유제품의 인도로의 수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내 섬유산업이 자체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내수시장의 제품 구매력이 타 FTA 경제권에 비해 낮은 것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표 4-2 | 섬유제품 협정별 수출 주요품목 및 특징(2012)

협정	주요 품목	특징
ASEAN	편직물, 폴리에스터 직물 부직포	다른 FTA국과 비교하여 섬유류 수출실적은 압도적으로 높음 상위 10개 품목의 FTA 활용비중이 저조함
미국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양말, 타이어 코드	폴리에스텔 섬유, 염색직물 수출실적 및 FTA 활용비중 높음 EU보다 상위 10대 품목에 대한 평균 FTA 활용비중이 낮음 ³⁶⁾
EU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장갑, 타이어코드	폴리에스텔 섬유, 편직물 수출규모 및 FTA 활용비중 높음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 활용비중 84.5%
인도	기타의 섬유제품, 부직포	섬유류 수출규모가 타 FTA 국가에 비해 적음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비중 역시 낮은 편
칠레	편직물, 폴리에스텔 섬유 로프, 재생직물	수출규모 대비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비중 평균수준 폴리에스텔 섬유, 로프의 수출규모 및 FTA 활용수준 높음
페루	편직물,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로프	부직포, 편직물 수출규모 및 FTA 활용 비중 높은 편
EFTA	양말, 기타의 섬유제품 부직포, 장갑	양말, 장갑 수출규모 크며, FTA 활용비중도 높은 편 상위 10대품목의 수출규모 FTA국 중 가장 적음

35) 제직 및 편직부터 염색 및 날염 또는 재단 및 봉제

36) 원산지 결정기준이 원사기준으로 매우 엄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타이어코드의 경우 반드시 역내산 인조섬유를 사용해야 함)

2) 섬유제품 FTA 특혜 수입

섬유제품 FTA국 수입실적 서구 경제권인 EU와 미국에서 수입비중 높으며, 아시아권인 ASEAN 및 인도에서 수입비중 역시 돋보임

2012년 섬유제품 FTA 대상품목의 수입규모는 약 46억불로 FTA 섬유제품 수출실적보다 다소 적다. ASEAN과 EU에서 차지하는 비중³⁷⁾이 각각 60.4%, 26.2%이며, 미국이 6.6%를 기록하였다.

ASEAN은 수출과 유사하게 FTA 경제권 중 섬유제품의 수입실적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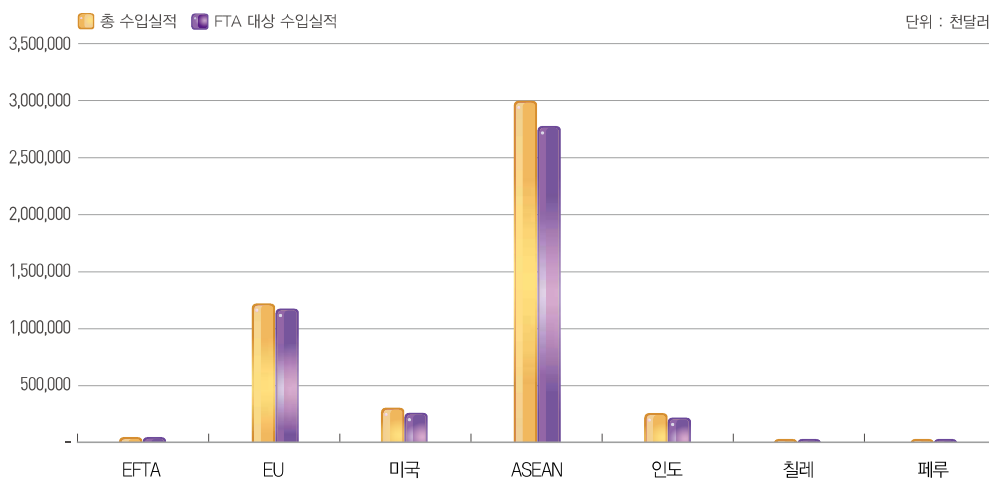
FTA 국가별로 살펴보면, ASEAN 수입상위 10대 품목은 평균 FTA 활용 비중이 9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코트 및 자켓, 남성바지 등의 의류제품이 ASEAN 국가로 수입되었다.

EU에서는 기타 재생섬유와 침구이불이 수입규모 및 FTA 활용측면에서 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수입실적이 컸던 직물제 가방(HS 4202.12-2000)의 경우 8%에 달하던 관세가 협정이후 단계적으로 철폐되었음에도 FTA 활용비중은 타 품목과 비교하여 낮았다. 이는 FTA 협정이후에도 불구하고 유럽 수출기업의 마케팅 전략인 고가정책으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거나, 유럽현지 기업에서 FTA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국가 중 세계 최대 면화 생산자인 인도에서의 면화수입은 상위 10대품목 중 수입실적에서 70%이상을 차지하였다.

| 그림 4-6 | 협정별 섬유제품 수입현황 (2012)



37) FTA 대상수입 총계 중 개별 국가의 비중

| 표 4-3 | 섬유제품 협정별 수입 주요품목 및 특징 (2012)

협정	주요품목	특징
ASEAN	코트 및 자켓, 남성바지 기타운동복, 언더셔츠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 94.5% 주요품목의 FTA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짐
미국	아세테이트사, 부직포 나일론사, 양탄자	아세테이트사, 나일론사 수입규모가 크며, FTA 활용비중 높음
EU	직물제 가방, 침구이불 스웨터, 손수건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 평균 비중 60%를 차지 기타재생섬유, 침구 이불 수출규모·FTA 활용비중 높음
인도	폴리에스터사, 블라우스 양탄자, 기타의 섬유제품	순면사의 수입규모는 상위 10대 품목 중 70% ³⁸⁾ 이상 차지
칠레	기타의 재생섬유, 기타의 섬유제품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규모 및 FTA 활용 비중 다른 FTA국가의 섬유류와 비교해 가장 낮은 편
페루	소모, 스웨터 남성아우터셔츠, 스웨터	소모 ³⁹⁾ , 소모사 ⁴⁰⁾ 의 FTA 수입활용 비중 높은 편
EFTA	신사복, 스웨터 편직물, 나일론 직물	수입규모는 적으나 FTA 활용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임

38) FTA 대상수입실적(상위 10대 품명) 중 면사가 차지하는 비중

39) 양모 섬유 중 양질의 긴 섬유를 선출하여 섬유의 긴 방향으로 기지런히 한 것

40) 소모방직으로 만든 가는 털실로 소모사의 직물은 정장용에 주로 사용됨

FTA 활용: 섬유제품 성공사례

사례 1 (인적자원 활용) B사 원산지 관리사 활용하여 수출실적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B사는 극세사를 사용하여 기능성 클리너 제품과 욕실용품을 제조하는 직물제조업체로 주로 유럽권(스웨덴, 프랑스 등)국가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원재료 및 중간제품 공급업체에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려하였고, B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FTA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존 직원 중 업무신뢰도가 높은 직원에게 원산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FTA 전문성을 확보시켰다. B사의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직접 발로 뛰어 협력을 설득하고, 담당자의 노력으로 해당기업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B사는 한·EU FTA 활용에 따른 12%의 관세절감 효과로 협정 발효 1년 후 전년 동기대비 수출실적이 40% 증가하였다.

사례 2 (원산지결정 기준 활용) C사의 원산지 결정기준 예외규정 활용

C기업은 방직용 섬유제의 가방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 침체기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C사는 한·미 FTA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산지 충족이 어렵다는 인식과 섬유제품은 다단계 생산구조로 되어 있어 원산지 증빙에 어려움이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C사는 섬유제품 원사기준의 예외조항(Single Transformation)*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내었다.

* 방직용 섬유재료의 가방(HS 4202.22, 4202.33, 4202.92)와 재킷·블레이저(HS 6104.33, 6104.39)의 경우 단일 변경 기준 적용 가능

이와 함께 C사는 실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요소인 원산지충족 방법, 서류, 활용혜택,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에 관해 FTA 컨설팅을 받았다. 한·미 FTA로 인해 C사의 방직용 섬유제 가방은 협정 발효 전 대비 수출실적이 238%로 증가하였다.

사례 3 (지역특화산업 개발)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FTA 수출모델

H 연구소는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핵심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정보 분석 등을 통해 섬유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업체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섬유 제조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TA에 관한 정보가 뒤쳐져 있었다. 이에 H 연구소는 세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FTA 업무지원, 제도개선, 섬유산업관련 연구소의 지원활동을 해나갔다. 또한, 'FTA 민원창구'를 개설하였으며, 한·미 FTA 설명회 등 교육을 상시 개최하여 섬유제품 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한·미 FTA 발효 후 경기북부지역 섬유제조업체의 對미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35%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EU로 수출되는 섬유제품 또한 18%의 수출증가 효과가 발생하였다.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1) FTA 수출 주요 품목

섬유제품 FTA국 수출 공통 품목 편직물, 폴리에스테일 섬유, 폴리에스터 직물 등

섬유산업의 FTA국 수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소수의 국가(미국, EU, ASEAN)로 섬유제품 수출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EU로 수출되는 상위 10대 품목은 대부분 수출규모 및 평균 FTA 활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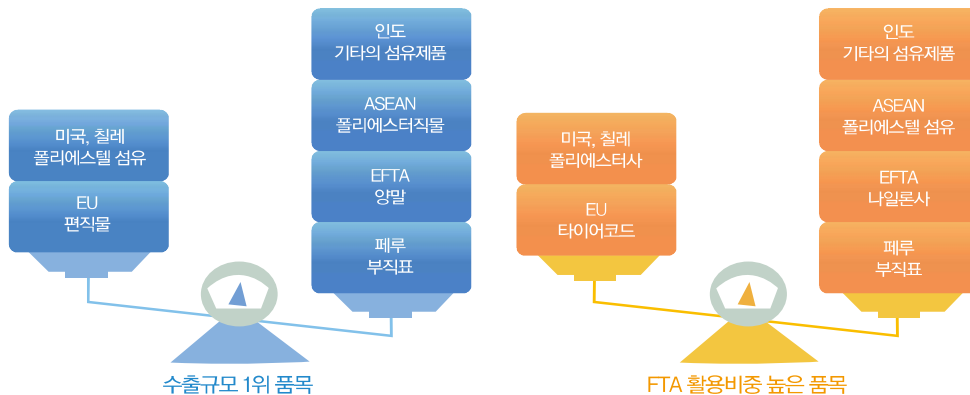
이는 FTA 체결전 EU 섬유제품은 10%이상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협정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로 섬유제품 FTA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실적이 공통적으로 높은 품목은 편직물, 폴리에스테일 섬유, 폴리에스터 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FTA 국가로의 수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 수출규모 1위 품목인 편직물의 경우 기존 관세가 8%였으나, FTA 발효 이후 무관세가 되었다. 해당품목은 수출규모 및 FTA 활용비율을 고려할 때, 향후 FTA 유망품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FTA별 수출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타이어코드와 폴리에스테일 섬유이다. 특히, 타이어 코드는 산업용 섬유⁴¹⁾로 우리나라가 기술과 시장점유율에서 세계 1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FTA 활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SEAN에서의 섬유제품 수출실적은 FTA국중 1위였으나, FTA 활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했다. 앞으로 ASEAN 시장은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FTA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용 섬유, 고기능성 섬유소재 발굴, 염색가공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그림 4-7 | 협정별 섬유제품 특혜수출 FTA 활용상 특징



41) 비리류용 섬유로 분류되며, 기술적·기능적 성능과 물질적 성질이 미적 또는 장식적 특성보다 더 중요시되는 섬유

2) FTA 수입 주요 품목

섬유제품 FTA국 수입 품목 국가별로 다양하며, EU(직물제 가방), 미국(아세테이트사)

FTA 국가별로 섬유제품의 수입실적 1위 품목은 EU에서는 직물제 가방, 미국은 아세테이트사, 인도는 순면사 등으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도의 면화품목은 FTA 10대 대상품목 중 70%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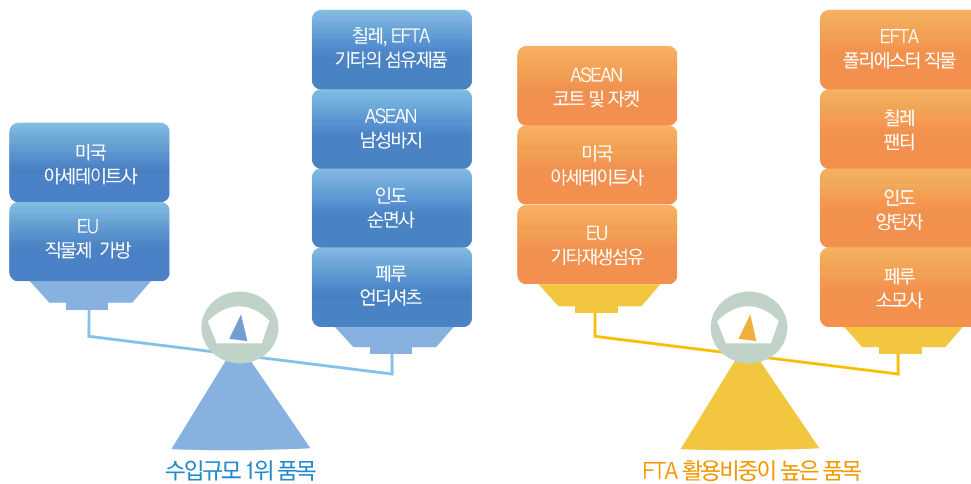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EU는 기타재생섬유, 미국에서는 나일론사로 파악되었다. 이외에 EFTA에서는 폴리에스터 직물과 나일론 직물이 FTA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FTA의 전체 수입규모는 다른 FTA 경제권에 비해 적은 편이나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섬유제품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미국, 페루, 칠레의 경우 타 FTA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채택

개별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미국, 페루, 칠레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엄격한 원사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한 것은 FTA국가별로 자국내 섬유산업의 중요도가 반영된 것이다.

한편, 원사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의 섬유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EU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미국보다 유연하게 되어 있으며, 원단의 경우 원사기준이, 의류제품의 경우 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그림 4-8 | 협정별 섬유제품 특혜수입 FTA 활용상 특징



[표 4-4] FTA별 섬유류 품목별 기준 비교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원사기준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1.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 2. 부가치기준	직물기준	1. 섬유사/직물: 원사기준 2. 의류:직물기준	원사기준	원사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3), 한·미 FTA 검증대응전략

주 : 협정별로 포괄 정리한 것으로 모든 섬유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님

FTA 체결국 중 섬유제품 주요 교역국인 한·미 FTA의 관세철폐수준은 수입액 기준 61%, 품목수 기준 87%의 미국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나라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이 개선되었다. 원산지기준에 있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을 두었다. 예를 들어, 가방·남성셔츠 등의 제품은 단일실질 변경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아크릴 및 재생섬유, 재생 필라멘트사는 역외조달을 허용하였다. 또한 역내 공급 부족 원료를 사용한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특혜쿼터를 도입하였다. 특히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對미수출 생산 관련기업에 한해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연례 제공하기로 하였다.

ASEAN에서는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채택하였다. 한·ASEAN FTA에서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세번변경기준 도입에 합의하였으며,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요청으로 부가치기준을 병행기준으로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은 FTA국가로 시장진출시 원산지 결정기준과 개별 국가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략을 통해 FT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유제품의 FTA 활용비중이 낮은 국가는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FTA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니즈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업의 인지도 강화 또는 해당 국가내의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FTA 사후검증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EU와 미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섬유산업 시장이 확대되는 기회를 얻었다. 실제로 FTA국별 섬유교역현황(2012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미국과 EU의 수출규모⁴²⁾와 활용비중이 타 FTA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2) ASEAN은 수출규모는 FTA국 중 1위국으로 나타났으나, 개별국가의 산업적 특성 및 내수시장의 구매력 등의 요인으로 상위 10대 품목의 FTA 활용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미국의 경우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 수출 활용비중이 EU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섬유산업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별국의 산업발달 및 중요도, 내수시장의 구매력, 정부기관의 정책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원산지검증대상을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세수손실이 크고 미국경제와 국민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최우선 무역관리대상(PTI : Priority Trade Issues)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섬유제품 미국의 대표적 최우선 무역관리대상 사후검증 가능성 높음

대표적 PTI 물품은 자동차, 섬유, 철강, 농산물 등으로 미국이 징수하는 관세징수액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이 섬유를 자국의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 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원산지 검증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⁴³⁾ 또한, 올해는 한·미 FTA 발효 2년차가 되는 해로 미국의 섬유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원산지 검증방법과 대응방안에 대해 숙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원산지 검증은 미국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검증 방법은 서면 정보제공 요청, 서면 질의 또는 현장방문 조사의 형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수입자를 우선으로 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이 진행된다.

또한 현장방문보다는 서면방식에 의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사후검증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출이전 단계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첫단계 : 수출계약 단계 HS CODE와 원산지 증명서 확인

우선, 수출계약시 수출자는 HS CODE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 물품이라도 우리나라 세관과 미국 세관의 품목분류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국 수입자에게 HS CODE를 문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수입자측에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미국 측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8가지 필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자는 미리 미국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미국 세관에서 수용가능한 양식인지 질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3) 월간관세무역(2013)미국세관의 의류제품 원산지검증 착안사항 및 검증 수위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두 번째 단계: 수출품 생산시 외부협력업체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사전 노력 필요

수출품의 생산시, 외부협력업체를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는 등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따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관해 수출자는 업체일반정보, 작업순서표, 주요 생산공정 수행업체의 구분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업체일반정보는 생산 또는 가공을 의뢰하는 협력업체의 소재지, 담당자 등의 일반정보 및 직접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보유여부, 생산시설 종류에 대해 확인 후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수출자는 작업순서표를 작성하는데, 수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하는 업체의 이름을 작성하고 순서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 해당제품의 생산자 정보를 알려야 한다. 미국 수입자는 이를 기반으로 MID(Manufacturer's Identification) 코드를 생성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입하는데 해당제품의 생산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부여하는 주요 생산공정을 수행한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원단의 경우 제직공정을 수행한 업체, 의류의 경우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업체가 생산자에 해당된다.

이런 형태로 구분된 “주요 생산공정을 수행한”생산자는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되는 상업송장에 별도로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섬유제품 사후검증 대비방안 세번째 단계: 원산지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와 유기적 협력 필요

이 외에 수출업체에서는 원산지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내의 관련 담당자들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준수해야 할 세부업무 규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업체에서 원산지 내부규정을 만들면, 수출계약에서 협력업체와의 물품매매 또는 외부가공계약 역시 원산지 내부관리규정에 따라 체결하며, 국내 원재료공급업체 및 외주가공업체와 별도의 원산지관리협정서 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⁴⁴⁾

1990년대부터 수출감소로 인해 섬유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섬유산업 거대시장인 EU와 미국과의 FTA체결은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미국의 섬유 수입관세는 평균적으로 7.9%, 의류는 평균 11.4%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의 영향으로 섬유류 對미 수출은 전년대비 5.63%의 성장⁴⁵⁾을 기록하였다.

44) 섬유산업연합회(2013), 섬유패션산업 동향

45) KOTRA(2013),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성과분석

우리나라 섬유수출기업의 FTA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는 주요 교역국인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와 섬유 제품 가격경쟁력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협정관 세대우 보류 또는 배제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미국으로 수출이 어려워져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FTA를 통해 섬유산업의 부흥을 지속해 나가려면 기업에서는 FTA 체결국의 사후검증에도 유의하여 수출 이전단계부터 면밀한 준비를 통해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